StarShop 서비스 계약서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이하 "갑"이라 한다)와 StarShop 가맹점 (이하 "을"이라 한다)은 StarShop 서비스 업무제휴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StarShop 서비스 제도와 관련하여 "갑"의 회원에게 StarShop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과 "을"간의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StarShop 서비스"란 "갑"의 회원이 "을"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을"은 "갑"의 회원에게 포인트리를 적립해 주고. "갑"은 "을"에게 다양한 홍보 및 지원 프 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 "StarShop 가맹점"이란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업소 또는 시설로 StarShop 서비스
- 가입규약 또는 계약을 제결한 가맹점인 "을"을 말한다.. ③ "회원"이란 "갑"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갑"에 가입한 신용 및 체크카드 회원을 말한다(단, KB 국민비씨카드 회원은 제외한 CE)
- ④ "포인트리"란 회원이 "을"로부터 용역 및 재화를 구입할 경우 "갑"과 "을"간 계약 기
- 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리를 말한다. "누적 포인트리"란 회원이 "을"로부터 적법하게 부여 받은 포인트리 중 이미 사용한 포인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리의 합계를 말한다.
- "발생 포인트리"란 회원이 "을"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 약정 적립률에 따라 발생 즉 시 제공되는 포인트리를 말한다.
- ⑦ "포인트리 대금"이란 회원 적립금을 말하며, 이는 회원에게 실제 적립되는 금액을 의 미하며 1포인트리는 1원에 해당한다
- ⑧ "적립률"이란 해당 매출액에 대하여 "을"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리대금의 비율

제 3 조 ("StarShop 서비스"의 내용)

회원이 "을"에게 회원카드로 용역 및 재화구입시 약정 적립률에 해당하는 포인트리를 "을"이 제공한다.

제 4 조 (서비스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StarShop 서비스 홍보
- 2. 할인행사 등 공동 프로모션 지원
- 3. 인터넷상으로 가맹점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 4. 인터넷상으로 할인쿠폰 등 판촉활동 지원
- 5. 기타 다양한 이벤트 참여 서비스

제 5 조 (가맹점 준수사항)

- ① "을"은 회원에게 회원카드의 사용을 제약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을"은 "갑"이 요청하는 수정사항을 통지 받는 즉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제 3 조의 StarShop 서비스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을"은 StarShop 서비스 내용 안내 및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종업원 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② "을"은 포인트리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포인트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관계가 회원과 "갑"에게 이전함에 동의한다.
- ③ 회원에게 제공된 포인트리 대금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회원의 구매실적 분석자료를 '을"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 ④ 포인트리대금 관련 진위확인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⑤ 포인트리 대금의 정산은 "갑"이 "을"의 가맹점 대금을 정산할 때 가맹점수수료와 함 께 선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포인트리 제공)

제 7 또 (도르르더 제공) "을"은 포인트리에 대한 적립을 "갑"의 가맹점 매출대금 정산시에 적립률에 해당하는 포 인트리를 회원에게 제공한다. (단, "갑"이 가맹점 홍보 등 운용 비용확보를 위해 회원별 연간 최대 1,000 점까지 차감하여 사용한다.)

제 8 조 (가맹점 홍보지원)

"갑"은 회원에게 "을"의 적립서비스 내용을 홍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의 최근에게 글 그 그 다시하고 데등을 중되어야 하다. 어때 데는 데등로 등 다 로 한다. 또한 "을"이 부당한 회원앞 작립된 포인트리가 유효기간 경과 등 실효처리된 포인트리는 "갑"이 가맹점홍보, 프로모션 실시등의 비용으로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제 9 조 (제신고사항의 변동사항 통보)

- ①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가맹점 폐업 및 업종 변경
 - 2. 가맹점의 상호, 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등 변경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② "을"은 제 1 항이 발생하는 즉시 "갑"에게 방문 또는 유선 및 서면으로 성실하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협조사항)

"갑"은 "을"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각종 판촉행사 및 서비스를 기획, 활성화 하여야 하며, "을"은 이러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제 11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제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 면에 의한 해지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 는 것으로 하며,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계약을 유

제 12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후 별도의 서비스 전산등록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 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은 " '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1."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 2."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3."을"이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생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 5.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6. "갑"의 경영상의 사유로 동 제도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을"에게 1개월이전에 사전 고지한 경우
 - 7."을"이 동서비스 전산등록일로부터 3개월 동안 매출실적 발생이 없는 무실적일 경우
- 8. 기타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상기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1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을"은 기 적립된 포인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해지 이후 발생활지도 모를 각 당사자의 예정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협조하며 본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16 조 (손해배상)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17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영업상 기밀 또는 회원정보에 대하 여 상호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하거나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18 조 (잔존의무)

지 17 조의 비밀유지 의무 및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본 계약의 기 간만료, 계약해지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19 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고, 별도 합 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체결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가맹점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주식회사 KB 국민카드 귀하

이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 니다. 이에 본인은 주식회사 KB 국민카드가 신용정부를 신용정부집중기관, 신용정부업 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며,"갑"과 "은 본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한 후 각 자 날인하여 1 부씩 보관한다.

"을 "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 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	포인트리	적립률	및	정산빙	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까?	

2011년 월 일